# 목 차

정 정 신 고 (보고) .....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5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

#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08월 1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08월 11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 |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br>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br>(4)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청구기간 기재 정정 | | |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 1차 | 2023-08-14 | 2023-09-14 | 2023-08-14 | 100% |
| 2차 | 2023-11-14 | 2023-12-14 | 2023-11-14 | 100% |
| 3차 | 2024-02-14 | 2024-03-14 | 2024-02-14 | 100% |
| 4차 | 2024-05-14 | 2024-06-14 | 2024-05-14 | 100% |
| 5차 | 2024-08-14 | 2024-09-14 | 2024-08-14 | 100% |
| 6차 | 2024-11-14 | 2024-12-14 | 2024-11-14 | 100% |
| 7차 | 2025-02-14 | 2025-03-14 | 2025-02-14 | 100% |
| 8차 | 2025-05-14 | 2025-06-14 | 2025-05-14 | 100% |
| 9차 | 2025-08-14 | 2025-09-14 | 2025-08-14 | 100% |
| 10차 | 2025-11-14 | 2025-12-14 | 2025-11-14 | 100% |
| 11차 | 2026-02-14 | 2026-03-14 | 2026-02-14 | 100% |
| 12차 | 2026-05-14 | 2026-06-14 | 2026-05-14 | 100% |
| 13차 | 2026-08-14 | 2026-09-14 | 2026-08-14 | 100% |
| 14차 | 2026-11-14 | 2026-12-14 | 2026-11-14 | 100% |
| 15차 | 2027-02-14 | 2027-03-14 | 2027-02-14 | 100% |
| 16차 | 2027-05-14 | 2027-06-14 | 2027-05-14 | 100% |
| 17차 | 2027-08-14 | 2027-09-14 | 2027-08-14 | 100% |
| 18차 | 2027-11-14 | 2027-12-14 | 2027-11-14 | 100% |
| 19차 | 2028-02-14 | 2028-03-14 | 2028-02-14 | 100% |
| 20차 | 2028-05-14 | 2028-06-14 | 2028-05-14 | 100% |
| 21차 | 2028-08-14 | 2028-09-14 | 2028-08-14 | 100% |
| 22차 | 2028-11-14 | 2028-12-14 | 2028-11-14 | 100% |
| 23차 | 2029-02-14 | 2029-03-14 | 2029-02-14 | 100% |
| 24차 | 2029-05-14 | 2029-06-14 | 2029-05-14 | 100% |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 1차 | 2023-08-14 | 2023-10-14 |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통지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 100% |
| 2차 | 2023-11-14 | 2024-01-14 | 상동 | 100% |
| 3차 | 2024-02-14 | 2024-04-14 | 상동 | 100% |
| 4차 | 2024-05-14 | 2024-07-14 | 상동 | 100% |
| 5차 | 2024-08-14 | 2024-10-14 | 상동 | 100% |
| 6차 | 2024-11-14 | 2025-01-14 | 상동 | 100% |
| 7차 | 2025-02-14 | 2025-04-14 | 상동 | 100% |
| 8차 | 2025-05-14 | 2025-07-14 | 상동 | 100% |
| 9차 | 2025-08-14 | 2025-10-14 | 상동 | 100% |
| 10차 | 2025-11-14 | 2026-01-14 | 상동 | 100% |
| 11차 | 2026-02-14 | 2026-04-14 | 상동 | 100% |
| 12차 | 2026-05-14 | 2026-07-14 | 상동 | 100% |
| 13차 | 2026-08-14 | 2026-10-14 | 상동 | 100% |
| 14차 | 2026-11-14 | 2027-01-14 | 상동 | 100% |
| 15차 | 2027-02-14 | 2027-04-14 | 상동 | 100% |
| 16차 | 2027-05-14 | 2027-07-14 | 상동 | 100% |
| 17차 | 2027-08-14 | 2027-10-14 | 상동 | 100% |
| 18차 | 2027-11-14 | 2028-01-14 | 상동 | 100% |
| 19차 | 2028-02-14 | 2028-04-14 | 상동 | 100% |
| 20차 | 2028-05-14 | 2028-07-14 | 상동 | 100% |
| 21차 | 2028-08-14 | 2028-10-14 | 상동 | 100% |
| 22차 | 2028-11-14 | 2029-01-14 | 상동 | 100% |
| 23차 | 2029-02-14 | 2029-04-14 | 상동 | 100% |

| | | | | | | | | | | |
|---|---|---|---|---|---|---|---|---|---|---|
| | | 25차 | 2029-08-14 | 2029-09-14 | 2029-08-14 | 100% | 24차 | 2029-05-14 | 2029-07-14 | 상동 | 100% |
| | | 26차 | 2029-11-14 | 2029-12-14 | 2029-11-14 | 100% | 25차 | 2029-08-14 | 2029-10-14 | 상동 | 100% |
| | | 27차 | 2030-02-14 | 2030-03-14 | 2030-02-14 | 100% | 26차 | 2029-11-14 | 2030-01-14 | 상동 | 100% |
| | | 28차 | 2030-05-14 | 2030-06-14 | 2030-05-14 | 100% | 27차 | 2030-02-14 | 2030-04-14 | 상동 | 100% |
| | | 29차 | 2030-08-14 | 2030-09-14 | 2030-08-14 | 100% | 28차 | 2030-05-14 | 2030-07-14 | 상동 | 100% |
| | | 30차 | 2030-11-14 | 2030-12-14 | 2030-11-14 | 100% | 29차 | 2030-08-14 | 2030-10-14 | 상동 | 100% |
| | | 31차 | 2031-02-14 | 2031-03-14 | 2031-02-14 | 100% | 30차 | 2030-11-14 | 2031-01-14 | 상동 | 100% |
| | | 32차 | 2031-05-14 | 2031-06-14 | 2031-05-14 | 100% | 31차 | 2031-02-14 | 2031-04-14 | 상동 | 100% |
| | | 33차 | 2031-08-14 | 2031-09-14 | 2031-08-14 | 100% | 32차 | 2031-05-14 | 2031-07-14 | 상동 | 100% |
| | | 34차 | 2031-11-14 | 2031-12-14 | 2031-11-14 | 100% | 33차 | 2031-08-14 | 2031-10-14 | 상동 | 100% |
| | | 35차 | 2032-02-14 | 2032-03-14 | 2032-02-14 | 100% | 34차 | 2031-11-14 | 2032-01-14 | 상동 | 100% |
| | | 36차 | 2032-05-14 | 2032-06-14 | 2032-05-14 | 100% | 35차 | 2032-02-14 | 2032-04-14 | 상동 | 100% |
| | | 37차 | 2032-08-14 | 2032-09-14 | 2032-08-14 | 100% | 36차 | 2032-05-14 | 2032-07-14 | 상동 | 100% |
| | | 38차 | 2032-11-14 | 2032-12-14 | 2032-11-14 | 100% | 37차 | 2032-08-14 | 2032-10-14 | 상동 | 100% |
| | | 39차 | 2033-02-14 | 2033-03-14 | 2033-02-14 | 100% | 38차 | 2032-11-14 | 2033-01-14 | 상동 | 100% |
| | | 40차 | 2033-05-14 | 2033-06-14 | 2033-05-14 | 100% | 39차 | 2033-02-14 | 2033-04-14 | 상동 | 100% |
| | | 41차 | 2033-08-14 | 2033-09-14 | 2033-08-14 | 100% | 40차 | 2033-05-14 | 2033-07-14 | 상동 | 100% |
| | | 42차 | 2033-11-14 | 2033-12-14 | 2033-11-14 | 100% | 41차 | 2033-08-14 | 2033-10-14 | 상동 | 100% |
| | | 43차 | 2034-02-14 | 2034-03-14 | 2034-02-14 | 100% | 42차 | 2033-11-14 | 2034-01-14 | 상동 | 100% |
| | | 44차 | 2034-05-14 | 2034-06-14 | 2034-05-14 | 100% | 43차 | 2034-02-14 | 2034-04-14 | 상동 | 100% |
| | | 45차 | 2034-08-14 | 2034-09-14 | 2034-08-14 | 100% | 44차 | 2034-05-14 | 2034-07-14 | 상동 | 100% |
| | | 46차 | 2034-11-14 | 2034-12-14 | 2034-11-14 | 100% | 45차 | 2034-08-14 | 2034-10-14 | 상동 | 100% |
| | | 47차 | 2035-02-14 | 2035-03-14 | 2035-02-14 | 100% | 46차 | 2034-11-14 | 2035-01-14 | 상동 | 100% |
| | | 48차 | 2035-05-14 | 2035-06-14 | 2035-05-14 | 100% | 47차 | 2035-02-14 | 2035-04-14 | 상동 | 100% |
| | | 49차 | 2035-08-14 | 2035-09-14 | 2035-08-14 | 100% | 48차 | 2035-05-14 | 2035-07-14 | 상동 | 100%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08월 11일

| | |
|---|---|
| 회 사 명 : | (주)리메드 |
| 대 표 집 행 임 원 : | 고 은 현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테크노월드 2차 301~303호 |
| | (전 화) 042-934-5560 |
| | (홈페이지) http://www.remed.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성 명) 윤 헌 수 |
| | (전 화) 031-696-4889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 | | | | |
|---|---|---|---|---|---|
| 1. 사채의 종류 |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 30,000,000,000 | |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 100,000,000,000 | |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 | 기준환율등 | - | | | |
| | 발행지역 | - |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8,000,000,000 |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
| | 운영자금 (원) | 12,000,000,000 |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
| | 기타자금 (원) | -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
| | 만기이자율 (%) | 0.0 | | | |
| 5. 사채만기일 | | 2035년 08월 14일 | | | |
| 6. 이자지급방법 | | 표면이자율은 0.0%로 별도의 이자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 | | |
| 7. 원금상환방법 |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35년 8월 14일에 권면금액의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
| 8. 사채발행방법 | | 사모 | |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00 | | | |
| | 전환가액 (원/주) | 29,052 | | |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1주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청약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과 액면가 금 오백원(₩500) 중 높은 금액(이하 초기 전환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리메드 기명식 보통주 | | |
| | | 주식수 | 1,032,631 | | |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6.96 | |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1년 08월 14일 | | |
| | | 종료일 | 2035년 07월 14일 | |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발행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그 당시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전환가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을 의미함)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 하는 발행가액으로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 전입 등을 통해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 기타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항 | | | |

| | | |
|---|---|---|
| | | 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br>조정후 전환가액=조정전 전환가액× [{A+(B×C/D)} / (A+B)]<br>A: 회사의 기발행주식수<br>B: 회사의 신 신발행주식수<br>C: 회사의 신 발행주식의 1주당 발행가격<br>D: 기준가<br><br>나. 가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br>기발행 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br>전환 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 될 경우 발행 될 주식의 수로 한다.<br>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br>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 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br><br>다. 합병, 분할, 감자, 주식분할 또는 주식합병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분할, 감자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 등의 직전에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본건 전환사채가 전액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사액을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분할, 감자,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단, 본 항에 따른 조정사유 중 감자 및 주식병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조정한 가액이상으로 조정한다.<br><br>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20년 11월 14일 및 그 이후 매3개월의 응당일(이하 전화가액 조정일)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숭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타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본항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의 한도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 당시 전환가액(전환가액 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br>마. 본항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

| | | | |
|---|---|---|---|
| | | | 바.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전환가액 조정의 한도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 당시 전환가액(전환가액 조정일전에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br>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b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난 후 매 3개월마다 아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br>가.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가액은 (i) 조기상환청구의 대상이 된 사채의 권면총액 및 (ii)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예정일의 직전일까지 연 0.0%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br>나.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난 후 매 3개월이 도래하기 1개월 전에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통지를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해당 행사가액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br>다.사채권자가 본 항에 따라 상환청구를 하더라도 실제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여전히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br>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 11. 청약일 | | | 2020년 08월 13일 |
| 12. 납입일 | | | 2020년 08월 14일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 14. 보증기관 |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2020년 08월 1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 참석 (명) | 2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br><br>(본 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에 해당되지 않으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2호,3호에 의거해 발행 후 1년간 사채의 분할을 금지하고,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부터 전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 |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br>-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자금의 사용 목적

(단위:억원)

| 사용목적 | 금액 | 내 용 |
|---|---|---|
| 시설자금 | 180 | 신규 공장 부지 매입 및 건설, 해외 생산법인 설립 및 공장 건설 |
| 운영자금 | 120 | 연구 개발 비용 및 회사 운영자금 |
| 계 | 300 | - |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시설자금 180억원, 기타 운영자금 120억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나, 이는 변동될 수 있으며, 자금사용 세부 사항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난 후 매 3개월 단위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가액은 (i) 조기상환청구의 대상이 된 사채의 권면총액 및 (ii)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예정일의 직전일까지 연 0.0%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난 후 매 3개월이 도래하기 1개월 전에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통지를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해당 행사가액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3) 사채권자가 본 항에 따라 상환청구를 하더라도 실제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여전히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4)조기상환청구기간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 1차 | 2023-08-14 | 2023-10-14 | 조기상환청구권 행사통지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 100% |
| 2차 | 2023-11-14 | 2024-01-14 | 상동 | 100% |
| 3차 | 2024-02-14 | 2024-04-14 | 상동 | 100% |
| 4차 | 2024-05-14 | 2024-07-14 | 상동 | 100% |
| 5차 | 2024-08-14 | 2024-10-14 | 상동 | 100% |
| 6차 | 2024-11-14 | 2025-01-14 | 상동 | 100% |

| | | | | |
|---|---|---|---|---|
| 7차 | 2025-02-14 | 2025-04-14 | 상동 | 100% |
| 8차 | 2025-05-14 | 2025-07-14 | 상동 | 100% |
| 9차 | 2025-08-14 | 2025-10-14 | 상동 | 100% |
| 10차 | 2025-11-14 | 2026-01-14 | 상동 | 100% |
| 11차 | 2026-02-14 | 2026-04-14 | 상동 | 100% |
| 12차 | 2026-05-14 | 2026-07-14 | 상동 | 100% |
| 13차 | 2026-08-14 | 2026-10-14 | 상동 | 100% |
| 14차 | 2026-11-14 | 2027-01-14 | 상동 | 100% |
| 15차 | 2027-02-14 | 2027-04-14 | 상동 | 100% |
| 16차 | 2027-05-14 | 2027-07-14 | 상동 | 100% |
| 17차 | 2027-08-14 | 2027-10-14 | 상동 | 100% |
| 18차 | 2027-11-14 | 2028-01-14 | 상동 | 100% |
| 19차 | 2028-02-14 | 2028-04-14 | 상동 | 100% |
| 20차 | 2028-05-14 | 2028-07-14 | 상동 | 100% |
| 21차 | 2028-08-14 | 2028-10-14 | 상동 | 100% |
| 22차 | 2028-11-14 | 2029-01-14 | 상동 | 100% |
| 23차 | 2029-02-14 | 2029-04-14 | 상동 | 100% |
| 24차 | 2029-05-14 | 2029-07-14 | 상동 | 100% |
| 25차 | 2029-08-14 | 2029-10-14 | 상동 | 100% |
| 26차 | 2029-11-14 | 2030-01-14 | 상동 | 100% |
| 27차 | 2030-02-14 | 2030-04-14 | 상동 | 100% |
| 28차 | 2030-05-14 | 2030-07-14 | 상동 | 100% |
| 29차 | 2030-08-14 | 2030-10-14 | 상동 | 100% |
| 30차 | 2030-11-14 | 2031-01-14 | 상동 | 100% |
| 31차 | 2031-02-14 | 2031-04-14 | 상동 | 100% |
| 32차 | 2031-05-14 | 2031-07-14 | 상동 | 100% |
| 33차 | 2031-08-14 | 2031-10-14 | 상동 | 100% |
| 34차 | 2031-11-14 | 2032-01-14 | 상동 | 100% |
| 35차 | 2032-02-14 | 2032-04-14 | 상동 | 100% |
| 36차 | 2032-05-14 | 2032-07-14 | 상동 | 100% |
| 37차 | 2032-08-14 | 2032-10-14 | 상동 | 100% |
| 38차 | 2032-11-14 | 2033-01-14 | 상동 | 100% |
| 39차 | 2033-02-14 | 2033-04-14 | 상동 | 100% |
| 40차 | 2033-05-14 | 2033-07-14 | 상동 | 100% |
| 41차 | 2033-08-14 | 2033-10-14 | 상동 | 100% |
| 42차 | 2033-11-14 | 2034-01-14 | 상동 | 100% |
| 43차 | 2034-02-14 | 2034-04-14 | 상동 | 100% |
| 44차 | 2034-05-14 | 2034-07-14 | 상동 | 100% |
| 45차 | 2034-08-14 | 2034-10-14 | 상동 | 100% |

| | | | | |
|---|---|---|---|---|
| 46차 | 2034-11-14 | 2035-01-14 | 상동 | 100% |
| 47차 | 2035-02-14 | 2035-04-14 | 상동 | 100% |
| 48차 | 2035-05-14 | 2035-07-14 | 상동 | 100% |

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일로부터 지급일(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36개월이 되는날)까지 연복리 0.5%를 적용하여 조기상환하거나 매수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최초 권면 총액의 40%를 초과하여 위 콜옵션을 행사 할 수 없다.
(2)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기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각 행사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 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슈량 및 행사 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항새청구를 하여야한다.
(3)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36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인도한다. 단,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의 지급 및 콜옵션 행사 대상 사채의 인도를 이행하고,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유관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콜옵션 행사일에 대상 사채를 인도할 수 없을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의 지급 및 콜옵션 행사 대상 사채의 인도를 이행하고,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본 사채의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콜옵션 한도금액(최초 권면총액의 40%) 상당의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하며,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본 계약에 따른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5)인수인이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양도해야 하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발행회사 등의 콜옵션 해아에 응할 의무)는 소멸하고,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키움프라이빗에쿼티에스테틱 사모투자합자회사 | - | 30,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
|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시설자금 180억원, 기타 운영자금 120억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나, 이는 변동될 수 있으며, 자금사용 세부 사항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고 |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 - | - | (B)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 | | | 6,088,916 | |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 | | | - | | | |